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69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 김주영·강준현·김기표

박해철 • 박희승 • 오세희

위성곤 • 윤후덕 • 이기헌

정일영 · 조인철 · 허성무

의원(12인)

제안이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불법 행위자, 배출 또는 수집·운반 등에 관여한 자, 불법 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한 자나 그 행위에 협력한 자, 토지 소유자 등에 부여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자가 부정한의도를 갖고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무단 투기 및 방치한 후 도주함으로써 해당 토지 사용을 허용한 토지 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토지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부적정 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더 확대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경우도 있 으나, 해당 토지 소유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책임을 경감해 주거 나 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처리비용을 감경하는 규정은 부 재한 실정임.

이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를 도입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 위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나. 행정대집행 비용을 토지소유자에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 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5항 신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대 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조치 명령을 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1항제1호의 조치명령대상자
 - 나. 제17조제8항·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 다.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명령대상자

- 나. 제17조제8항·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 3.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 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 간 책임 정도, 조치명령대상자의 조치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다음 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들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3제1항 중 "제48조제2항"을 "제48조제4항"으로,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이 제48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받은 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 및 부적정처리폐기물 제거 등 처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청구비용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감경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집행 비용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대집행 계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등) ① (생 략)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
	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
	<u>다.</u>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u>당하는 자</u>
	가. 제1항제1호의 조치명령대
	상자
	<u>나. 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u>
	<u>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u>
	지의 규정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의무
	를 승계한 자
	다.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
	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

<신 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u>제1</u>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

지의 조치명령대상자 나. 제17조제8항·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의무 를 승계한 자

- 3.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 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 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 자 간 책임 정도, 조치명령대상 자의 조치명령 이행 가능성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해당 조치명령 대상자에 앞서 다음 순위의 조 치명령대상자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u>4</u>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 회에 자문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u>제3항</u>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 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③ (생 략)

제49조(대집행)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⑥ 제5항
	<u> </u>
제	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
	회) ① 제48조제4항
	<u>(이하 "위원회"</u>
	<u>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	49조(대집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
	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이 제
	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에게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⑤ 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 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 받은 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발 생 방지 노력 및 부적정처리폐 기물 제거 등 처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청구비용을 감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 관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감경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u>6</u>	 제5항